

附加價值稅의 실무적 고찰

차 강석

〈본회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政府는 1977년 7월 1일부터 附加價值稅를 實施한다고 각 매스콤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알려왔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 또는 제공되는 거래단계에서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間接稅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생활인이면 누구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本誌는 附加價值稅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라도 풀어보기로 본회회계고문이신 차강석선생의 玉藻를 빌어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할 稅法에 대해 게재키로 했다.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편집자 주〉

1. 序
2. 附加價值稅의 一般的 内容
3. 1977.7.1 施行될 附加價值稅의 主要內容
 - (1)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 (2) 事業者登錄과 納稅地
 - (3) 課稅標準과 稅率, 零稅率 및 免稅
 - (4) 附加價值稅의 徵收方法과 納付稅額計算
 - (5) 申告와 納付
 - (6) 稅金計算書의 記載事項
4. 結語

1. 序

附加價值稅는 모든 財貨나 用役이 生產, 流通 또는 提供되는 모든 去來段階에서 企業이 附加하는 價值에 對하여 課稅하는 間接稅이다. 即 附加價值稅는 現在의 營業稅나 物品稅와 같이 企業의 賣出金額 全額에 對하여 課稅하는 것이 아니라 賣出金額에서 買入金額을 控除한 나머지

金額(附加價值 · margin)에 對하여 課稅하는 稅金이다.

附加價值稅의 課稅標準인 附加價值의 構成要素는 企業이 生產要素인 勞動, 資本, 土地의 提供者에게 支給하는 要素費用인 級料, 賃貸料, 支給利子, 企業利潤을 말하며 여기에서 企業利潤에는 企業의 純利益에 減價償却費, 各種準備金과 充當金을 포함한 넓은 意味의 企業利潤이다. 그리고 附加價值稅는 모든 去來段階에서 企業이 納付하지만 企業은 自己의 去來相對處로 부터 附加價值稅를 徵收하여 納付하는 것이며, 企業이 政府에 納付하는 모든 附加價值稅는 最終 消費者에게 轉嫁되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은 計算義務者로서 附加價值稅를 計算하고 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할 義務가 있는 것이며 最終 消費者가 擔稅者로서 附加價值稅를 徵收당하고 負擔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한편 附加價值稅의 納稅義務者는 個人과 法人 또는 法人格 없는 社團, 財團等을 포함하며 國家 · 地方自治 團體等의 公法人

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本協會와 같은 社團法人도 附加價值稅法의 適用을 받게 된다.

다음에 附加價值稅의 一般的內容과 1977. 7. 1부터 施行될 附加價值稅의 主要內容을 紹介하기로 한다.

2. 附加價值稅의 一般的內容

(1) 附加價值稅는 어떤 稅金인가

가) 附加價值稅란 商品이나 用役(서비스)이 生產·供給·流通되는 모든 去來段階에서 賣出(販賣)金額 全體에 對하여 稅金을 賦課하지 아니하고 企業(會社나 商店)이 附加하는 價值(마아진)에 對하여만 課稅하는 稅金이다.

나) 附加價值稅의 課稅方法은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할 때에 徵收한 稅額(賣出稅額)에서 買入(購入)할 때 徵收當한 稅額(買入稅額)을 振除하여 附加價值稅를 計算하는 것이 一般的의므로 우리나라도 이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納稅義務者인 事業者(商品이나 用役을 販賣 또는 提供하는 者)는 稅金計算書를 誠實하게 주고 받기만 하면 한푼의 稅金도 負擔하지 않고 最終消費者가 負擔할 稅額을 去來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하게 되는 것이다.

(2) 附加價值稅가 施行되면 어떤 稅金이 없어 지나

가) 1977年 7月 1日부터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를 施行하므로 다음과 같은 8個의 稅金을 단지 2個의 稅金으로 綜合하여 間接稅體制를 아주 簡素化하였다. 特히 附加價值稅는 종전의 복잡한 各種의 稅率을 하나의 稅率로 單一化하여 稅務行政 및 納稅者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舊法	新法
① 영업세.	① 부가가치세
② 물품세	② 특별소비세
③ 직물류세	
④ 석유류세	
⑤ 전기까스세.	
⑥ 통행세	
⑦ 입장세	
⑧ 우편음식세	

나) 다만, 單一稅率의 附加價值稅를 補完하기 위하여 보석, 귀금속, 에어콘, 휘발유, 기타 사치성 물품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賦課하고 있다.

(3) 從前과 比較하여 稅負擔은 어떻게 달라 지나

가) 從前의 營業稅는 모든 去來段階에서 누적적으로 重複課稅하고 間接稅가 原價에 包含되므로 稅金에 稅金이 賦課되는 폐단이 있었으나 附加價值稅는 附加價值에만 課稅하므로 重複課稅가 되지 않는다.

나) 미곡등 미가공식료품, 연탄, 水道물 等의 生活必需品에 대하여 從前에 營業稅가 課稅되었으나 附加價值稅는 免稅되므로 저소득층의 稅負擔은 높지 않는 稅制이다. 또한 사치품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課稅하므로 사치성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 物品稅가 저율과세되던 업종은 부담에 큰 變動이 없을 것이다, 物品稅가 課稅되다가 特別消費稅가 課稅되지 않는 業種은 負擔이 줄어지는 것이다.

다만, 營業稅만 課稅되던 業種은 負擔이 增加할 수도 있다.

3. 1977. 7. 1 施行될 附加價值稅의 主要內容

(1)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가. 納稅義務者

① 營利目的의 關係없이 國內에서 事業上 財貨를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事業者

② 事業者에는 個人, 法人 또는 法人格없는 團體가 包含되며 法人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도 包含된다.

나. 課稅對象

① 事業者가 供給(販賣, 提供等)하는 모든 財貨와 用役(서비스)

②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財貨

(2) 事業者 登錄과 納稅地

가. 事業者 登錄

① 모든 事業者는 事業場마다 所管稅務署에 등록하여 事業者登錄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② 이미 事業을 繼續하고 있는 事業者は 1977. 6. 10까지,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는 事業開始前이나 事業을 始作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다음 서류를 具備하여 所管 稅務署에 登錄 申請을 하여야 한다.

- 住民登錄票證本 2通(個人) 또는 法人등기부등본 1通(法人)
- 事業許可證寫本 1通(허가사업을 하는 경우)
- 事業場 貸貸借契約書寫本 1通(賃借者일 경우)

③ 檢閱

事業者は 매년 1月과 7月에 所管稅務署에 申請하여 事業者 登錄證을 檢閱받아야 한다.

1次檢閱 每年 1月 1日~1月 31日

2次檢閱 每年 7月 1日~7月 31日

나. 納稅地

① 事業者가 去來를 하는 事業場은 모두 納稅地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事業場마다 納付하여야 한다.

② 事業場이란 事業者 또는 그 사용인(회사원 또는 직원)이 항상 머물며 事業上 去來를 하는 場所를 말하며 事業場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事業者の 주소나 거소를 事業場으로 간주하게 된다.

③ 事業場이 2個以上 있는 個人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法人은 本店 또는 支店 所管稅務署에 課稅期間開始 30日前에 申請하여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總括納付를 할 수 있다.

(3) 課稅標準과 稅率, 零細率 및 免稅

가. 課稅標準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의 춘수한 공급가액이다.

② 輸入하는 財貨에 대한 課稅標準은 관세의 기준가격과 관세 特別消費稅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稅率은 13%로 單一稅率이다.

다 "0"稅率(完全免稅)

財貨의 輸出,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觀光事業 其他 外貨를 獲得하는 경우 財貨의 供給 또는 用役의 提供價額에 依하여는 "0"(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따라서 賣出稅額은 항상 "0"(無)이 되고 外貨獲得에 所要된 買入稅額은 政府로부터 還給받게 되어 輸出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라. 免稅(一般免稅)

(가) 生活必需品에 對하여는 附加價值稅가 免稅된다. 즉 쿠불, 채소, 과일 等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과 水道물, 연탄 等 免稅.

(나) 의료보건用役(병원), 교육用役(학교), 보험용역(보험회사), 旅客運送(시내버스) 等 은 國民厚生을 위하여 免稅.

(다) 不動產賃貸, 금융, 토지등과 國家地方自治團體가 供給하거나 無償으로 供給받는 財貨와 用役, 변호사等 人的用役, 宗教, 자선, 학술 및 公益단체가 供給하는 財貨와 用役 等도 免稅.

(라) 圖書, 新聞, 雜誌, 단판, 廣告는 除外한다.

(4) 附加價值稅의 徵收方法과 納付稅額計算

가. 去來徵收

① 製造業者, 都賣業者, 小賣業者 等 모든 事業者는 供給받은 財貨量, 他人에게 供給하는 경우에 그 供給價額에 $\frac{13}{100}$ 의 稅率을 有한 附加價值稅를 去來徵收하여야 한다.

② 外國으로 부터 財貨를 輸入하는 경우에는 稅關長이 그 財貨를 輸入하는 者로 부터 供給價額(關稅 正常價額+特別消費稅+關稅+酒稅)에 $\frac{13}{100}$ 의 稅率을 有한 附加價值稅를 去來徵收하여야 한다.

나. 稅金計算書

모든 事業者は 去來徵收時 稅金計算書를 반드시 作成, 交付하여야 한다.

다. 納付稅額 計算

商品의 販賣나 用役의 提供時 去來徵收한 稅

額(賣出稅額)에서 買入時 徵收當社 稅額(買入稅額)을 控除하여 納付稅額을 計算한다.

(5) 申告와 納付

가. 附加價值稅는 法人·個人 区分敘이 6個月을 1課稅期間으로 하여 2回의豫定申告納付를 하고 1回의 確定申告納付를 하여야 한다.

나. 申告時에는 交付한 稅金計算書와 交付받은 稅金計算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 申告納付期限

確 定 申 告			豫 定 申 告		
期別	課稅期間	申告納付期	期別	對象期間	申告納付期
第1期	1~6月	7月 20日	第1豫定	1~2月	3月 20日
			第2豫定	3~4月	5月 20日
第2期	7~12月	1月 20日	第3豫定	7~8月	9月 20日
			第4豫定	9~10月	11月 20日

(6) 稅金計算書의 記載事項

稅金計算書에 記載할 事項은 다음의 必要的 記載事項과 任意的 記載事項이 있으며 이中 特히 必要的 記載事項만은 全部 또는 一部가 記載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内容이 事實과 다른 경우의 買入稅額은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必 要 的 記 載 事 項	① 供給하는 事業者の 登錄番號와 姓名 또는 法人の 名稱
	② 供給받은 者의 登錄番號
	③ 供給價額과 附加價值稅額
	④ 作成年月日

- | | |
|-------------|--|
| 任意的
記載事項 | ⑤ 供給하는 者의 住所
⑥ 供給받는 者의 商號, 姓名, 住所
⑦ 供給品目
⑧ 單價와 數量
⑨ 引渡日字
⑩ 去來의 種類 |
|-------------|--|

4. 結語

1977.7.1부터 合理的인 間接稅制인 附加價值稅가 施行되게 되었다. 앞에서 이에 對한 主要內容을 實務的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우리는 個人的 生活人, 本協會會員인 專門職業人 그리고 本協會 所屬의 職員으로서 新로운 附加價值稅制에 對하여 關心을 가져야 하겠다.

附加價值稅制의 主要內容을 認識하고, 特히 交付 받은 稅金計算書上에 必要的 記載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가 記載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内容이 事實과 다른 경우의 買入稅額(自己가 負擔한 稅額)은 控除 또는 還給받지 못하므로 注意를 要한다.

한편 附加價值稅가 施行되면 法人稅法上의 去來源泉徵收制度인 法定源泉徵收와 特別源泉徵收制度는 廢止되며, 從來 營業稅法上 法人의 指定源泉徵收制度도 廢止되고, 所得에 對한 一般源泉徵收制度는 存續한다.

그리고 販賣, 支給報告書制度, 標準計算書制度도 廢止되고 所得에 對한 支給調書의 提出制度는 남게 되는 것이다.

